

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가유공자법)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국가보훈부 (보훈의료재활과-보철구, 심리재활지원) 044-202-5683
 국가보훈부 (보훈의료정책과-의료지원) 044-202-5645
 국가보훈부 (복지서비스과-양로, 요양, 양육지원) 044-202-5631
 국가보훈부 (복지서비스과-수송시설) 044-202-5636
 국가보훈부 (복지정책과-고궁 등 이용지원) 044-202-5620
 국가보훈부 (현충시설관리과-현충시설) 044-202-5572
 국가보훈부 (등록관리과-등록) 044-202-5431
 국가보훈부 (심사기준과-신체검사) 044-202-5424
 국가보훈부 (등록관리과-신상변동, 법적용배제) 044-202-5442, 5438
 국가보훈부 (보상정책과-보훈급여금) 044-202-5421
 국가보훈부 (생활안정과-교육, 주택우선공급, 생업지원) 044-202-5659, 5655
 국가보훈부 (생활안정과-취업지원) 044-202-5652
 국가보훈부 (생활안정과-대부지원) 044-202-5656
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08. 3. 28., 2011. 9. 15.>

1. 배우자
2. 자녀
3. 부모

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<신설 2011. 9. 15.>

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, 양자(養子)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.<개정 2008. 3. 28., 2011. 9. 15.>

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,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.<개정 2008. 3. 28., 2011. 9. 15.>

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,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.<개정 2011. 9. 15., 2013. 6. 4., 2015. 7. 24., 2016. 5. 29., 2019. 12. 31.>

1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
2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
3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
4. 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

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.<개정 2008. 3. 28., 2011. 9. 15.>

⑦ 삭제<1994. 12. 31.>

⑧ 삭제<2000. 12. 30.>

[제목개정 2008. 3. 28., 2011. 9. 15.]